

1. 제정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안 제2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안 제3조, 별표 1)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처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간 및 가중 또는 감경 기준(별표 1) 등을 정함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안 제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

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
(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해양교
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인력 구성
2. 재정계획서
3. 운영계획서
4. 교육훈련시설 현황(시설, 장비, 기자재 등)
5. 수강신청 및 취소,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
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및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계획서
4. 강의실, 체험활동 등 장비현황 및 계획서(임차시 임차계획서 및 계약서 포함)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료증 등)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7호서식과 같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2. 지도자 자격 및 교육환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

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및 인쇄물 등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7조(인증의 변경)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2월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6개월 중 짧은 기간을 한도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1개월 또는 운영정지 1개월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 해양교육센터
[] ()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위 치				
	기본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지원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운영인력	명 (상근관리자 명, 전문인력 명, 전문강사 명)			
	프로그램 운영현황	※ 프로그램 명칭 및 운영시간 등을 간략히 적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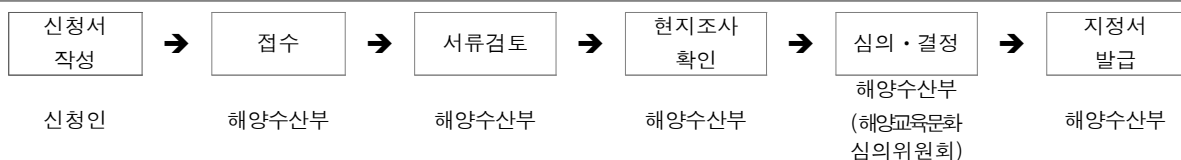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인력 구성 2. 재정계획서 3. 운영계획서(수강신청 및 취소,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포함) 4. 교육훈련시설 현황(시설, 장비, 기자재 등)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양교육센터
[] 00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서**

지 정 번 호	제 호		
지 정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유의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 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시정
[]운영정지

명령서

제 호					
처 분 대 상 자	등록·지정 번호		등록·지정 명칭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반사항					
처 기 간	시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운영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 사 분 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처분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 m²]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분야								
교 육 내 용	교육과목	강 사	교 육 시 간					
			계	강 의				
				실 습				
	교 육 시 설	시 설 구 분	시 설 수	면 적	비 고			
강 의 실			m ²					
실 습 장			m ²					
사 무 실			m ²					
화 장 실			칸					
건 물		[]신축 []개조 []구조변경						
소 유 관 계		[]자가 []임대						
교재·교구 및 사무용기기	교재·교구	사무용 기기			소방·안전 기구			
	교재	교구	컴퓨터	복사기	팩스	기타	소화기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주요 경력	소지 자격증
강사 인적 사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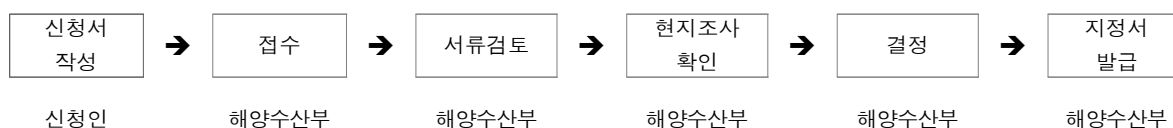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체험활동 등 장비현황 및 계획서(임차시 임차계획서 및 계약서 포함) 4. 그 밖에 해양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전문분야			
지정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해양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해양교육 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양교육 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수료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 . . ~ . . . (시간)

위 사람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홈페이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개 요	프로그램 명칭			
	교육대상			
	교육시간	계	강의	실습
	교육내용			
	진행방법			
	강사자격			
	평가방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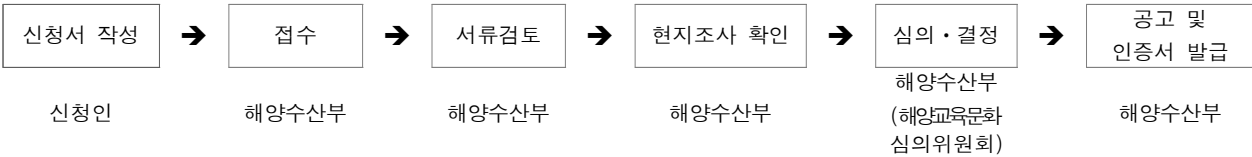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인증을 받으려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인 증 번 호	제 호	
프 로 그 램 명 칭		
인 증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유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증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인증기관	인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프로그램 명칭		
신 청 내 용	변경 사유		
	변경내용	※ 변경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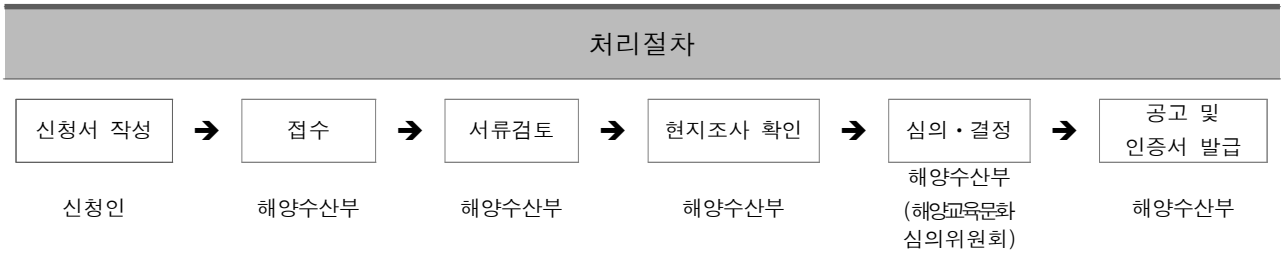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양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